# 제 안 요 청 서

사업명	용지보상시스템 확대·개편 방안 연구
발주기관	국토교통부

# 2023. 6.

	기관	부서	직위	성명	TEL	FAX
담당	담당 구트교투법	토지정책과	서기관	송종화	044-201-3401	044-201-5534
	1 = 4 = 6 = 7	포시 6 크피	주무관	손갑재	044-201-3409	044-201-3334

# ||| 목 차 |||

I. 연구용역 개요 ······· 1
Ⅱ. 주요 과업 내용(과업지시 사항) 2
Ⅲ. 제안서 작성 요령 3
IV. 제안서 제출 방법 5
V. 제안서의 평가 6
VI. 계약상대자 선정 8
붙임 1. 제안서 작성 목차 11
붙임 2. 제안서 편철 순서 및 서식 12

#### 1. 연구용역 개요

1. 과업명 : 용지보상시스템 확대 · 개편 방안 연구

### 2. 과업의 배경 및 목적

- 주요 **토지보상** 기관은 기관별<sup>\*</sup> 공익사업의 특성 및 형편에 맞는 보상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으며, 별도 **통합시스템은 없음** 
  - \* 국토부(건설CALS-용지보상시스템), LH(용지취득시스템), 도공(Hi-토지정보시스템) 등
- 모든 기관이 보상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자체 시스템 개발이 곤란한 지자체 등은 건설CALS-용지보상시스템을 외부 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
- o 다만 용지보상시스템은 우리 부 자체사업의 보상업무\*를 위한 것으로 외부기관에 개방 여부 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현실
  - \*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법 상 일반국도의 건설·관리를 위한 보상 등

#### **3. 용역 예산** : 70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※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

**4. 사업수행기간** :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(150일)

#### 5. 입찰 및 계약방식

- 가. 경쟁입찰, 총액입찰, 전자입찰방식
- 나.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
- 다.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.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-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 Ⅱ. 주요 과업내용(과업지시 사항)

#### 1. 사업 내용

- 보상 관련 시스템 운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
- 선행연구 및 기존 보상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 분석
- 기존 정책·제도 등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
- 용지보상시스템 **확대·개편 세부방안** 마련
- 다양한 공익사업이 활용할 수 있는 보편·개방형 개편 방안
- 기존 보상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연계 방안
- \* '제6차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'에 부합하는 로드맵('25년~'26년) 제시
- **시스템 확대·개편**을 위한 **관련 법령 개정사항** 검토
- **토지보상법령 상** 국토부장관의 보상시스템 운영 근거, 관계기관 보유 정보 등 수집·관리·활용 근거 등
- 건설기술진흥법령 상 보상시스템 개방·사용 근거 등
- 기타 개별사업법령 상 보상시스템 사용 및 자료 관리·제공 근거 등

#### 2. 과업 수행지침

#### 가. 일반사항

- 1) 과업 수행
- o 과업수행자는 「용지보상시스템 확대·개편 방안 연구」 용역 업무

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- 할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-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,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 ·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.
-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
  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,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
  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,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, 과업책임자 선임계,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, 과업책임자 이력서, 분야별 과업참여자, 예정공정표, 인력투입계획서,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,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・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,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"책임연구원"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·감독하며,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, 대학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
- "연구원"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- "연구보조원"이라 함은 통계처리·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.
-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정부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수립중인 각종 계획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-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, 한국은행 통계,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o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,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,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혐의·결정한다.
-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.
-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,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 하여야 하며, 보고서의 수록내용, 편집순위,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,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 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- ㅇ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

위해 사용할 수 없다.

- o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.
- o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,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- o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,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
#### 2) 과업 보고

- o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- o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o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o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나. 특수지침

#### 1) 성과품 소유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, 판권,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,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, 학술지 등에 발표·기고하고 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#### 2) 용역비용의 사용

-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(인쇄비, 여비, 회의비 등)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한다.
- 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(영수증 등)를 제시해야 한다.
-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사업(연구)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·경리하고, 사업비를 인출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소요된 비용만 인출하여야 한다.

#### 3) 과업 및 용역비 조정

-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 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-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.

#### 4) 자문위원회 구성 · 운영

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・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,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.

### 5)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

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# 6) 경미한 사항의 과업 수행

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#### 다. 설계변경 조건

-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ㅇ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
- ㅇ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
- ㅇ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
#### 라. 성과품 작성 및 제출

-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후 사업정산서 외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.
-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 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, 한자 등을 병기하며,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.

o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CD 및 저장장치 등에 저장 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.

구분	제출시기	수량	비고
착수보고	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	10부	착수보고서
중간보고	착수 후 3개월 이내	10부	중간보고서
최종보고 전	준공예정 15일전	FILE	최종보고서(안)
최종보고	준공일	20부	최종보고서

\* 수시보고서(자문회의결과 포함)는 별도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

#### 3. 보안대책

#### 가. 보안서약서 징구

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(외국인포함)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・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나. 자료관리

-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o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

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.

-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・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기타 자료,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.
-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 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,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, 폐지 등의 자료는 정·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·소각하여야 한다.
- 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 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 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하 여야 한다.

#### 다.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

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.

- o 발주처에서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-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「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」,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, 「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」 등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라. 사업 추진일정

업무		월	271	월	371	월	47	월	57l	월
1. 보상 관련 시스템 운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										
2. 용지보상시스템 확대·개편 세부방안 마련										
3. 시스템 확대·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검토										
4.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										

# Ⅲ. 제안서 작성 요령

#### 1.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

#### 가. 일반사항

- 제안업체는 본 용역의 목표, 범위,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.
-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.
- 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.
- o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제안 설명을 요구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한다.

#### 나. 기타사항

-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본 용역에 선정된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한다.

#### 2. 제안서의 효력

-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기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제출된 자료도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기술제안서는 허위 또는 추정에 의해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, 계약 체결 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- 이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3. 제안서 작성방법

-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,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.
-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
  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
   알 수 있도록 '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'를 제시하여야 한다.

- 이 제안서는 아래한글, Power Point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. 제안서 본문은 A4크기로 50매 이내로 한다.
- 이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안서 내용 중 용역 수행사항은 "∼를 한다", "∼를 하겠다"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,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(예시: ∼할 수 있다. ∼가능하다. ∼권고한다 등)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.
-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첨가·수정·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,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.

### Ⅳ. 제안서 제출방법

1. 제출기간 : 입찰공고문 참조

2. 제출서류 : 입찰공고문 참조

3.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: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(연락처: 044-201-3409)

### Ⅴ. 제안서의 평가

#### 1. 평가방법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 및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- 본 업무의 특성에 맞게 발주기관 자체 심의규정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
- o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- o 기술능력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.
-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(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)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출한다.
- 기술능력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, 85% 미만일 경우 제외한다.
-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부여
- 가격평가는 2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며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한다.
-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#### 2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#### 가. 기술능력 평가(80점)

- 기술능력 평가 점수 : 기술능력 평가 득점 × 80%
-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	<b>ਭ</b> 가항목	세부평가항목	배점 (A)	평점 (B)	점수 (AXB)	평가 방법
1	기관평가 (10점)	ㅇ 연구인력 보유현황	10	주1)		
2	연구진 평가 (10점)	○ 연구인력의 전문성	10	주2)		정량 평가 (계량)
3	참가제한 (10점)	○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	10	주3)		
4	과업접근 방 법 (30점)	○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,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- 용역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- 용역수행 능력의 우수성 - 용역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-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성 -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	30	주4)		정성
5	추진체계 및 일정 (30점)	○ 용역 추진일정·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- 용역 추진일정의 구체성 - 용역 추진방법의 적정성 - 용역 추진체계의 객관성	30	주4)		평가 (비계량)
6	기타 (10점)	<ul> <li>추가제안 내용의 우수성</li> <li>보고 및 검토계획, 보안대책</li> <li>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(위험관리, 자원관리, 진도관리, 보안관리,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)</li> </ul>	10	주4)		
		계	100			

### 주1) 기관평가(10점)

• 연구인력 보유현황(10점)

구분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
	(10명 이상)	(8명 이상)	(6명 이상)	(6명 미만)
평점	10	9	8	7

<sup>\*</sup> 공고일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 석사·박사, 변호사 등 연구인력, 전문 인력 보유 수

### 주2) 연구진 평가(10점)

• 연구인력의 전문성(10점)

구 분	5년 이상	4년이상	3년이상	3년미만
참여연구원의 평균 경력	10	9	8	7

\* 해당 연구와 관련된 박사의 경력을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절사

#### 주3)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(10점)

구 분	매우우수(0회)	보통(1회)	미흡(2회 이상)
<del></del> 평점	10	8	7

\*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

#### 주4) 정성(비계량) 평가는 해당 항목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

구 분	매우우수	우수	우수 보통	
평 점	배점 × 1	배점 × 0.9	배점 × 0.8	배점 × 0.7

#### 나. 입찰가격 평가(20점)

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상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

## Ⅵ. 계약상대자 선정

#### 1. 낙찰자 선정방법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한다.
-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%, 입찰가격평가 20%로 하며,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.
- o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(기술평가+가격평가)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

결정하며,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.

- o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.
- 협상결과의 통보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기획재정부 계약예규」 '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'에 의한다.

#### 2. 입찰참가자격: 입찰공고문 참조

#### 3. 기타사항

-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발주기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·공개할 수 없다.
- o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,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(부가가 치세 포함)으로 기재한다.
-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「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」등을
  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,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
   「청렴계약서」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.
-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「보안서약서」를 입찰 참가시 제출하여야 한다.

#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

 작 성 항 목	포 함 할 내 용
 I. 제안개요	·제안의 목표, 범위, 특징 등
Ⅱ. 업체현황	
1. 일반현황	·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, 자본금 등 <서식 3>
2. 조직 및 인원	·제안업체의 조직 및 전문가 보유 현황 등 <서식 5>
3. 연구내용	·제안업체의 주요 연구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
Ⅲ. 사업수행	·구체적 사업 내용, 방법론 등 기술
1. 연구의 필요성	·연구(관리)의 중요성, 앞으로의 전망 등 최종목표 기술
2. 연구의 내용	·주요내용 기술
3. 연구의 수행능력	·연구의 수행능력(관련 연구경험 등)에 대한 기술
4. 추진전략 및 방법	·주요내용별 과업수행전략 등 기술
5. 추진일정계획	·연구(관리)업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
6. 기대성과 및 활용	·연구(관리)를 통한 활용방안 등 기술
Ⅳ. 사후관리	
1. 하자보수	·연구(관리) 결과 오류검증 및 수정방안
2. 사후관리 능력	·연구(관리) 관련 사후관리 능력
3. 정보보안	·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대책
V. 기타사항	·위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

# 붙임 2

# 제안서 편철 순서 및 서식

- 1. 과업제안서 표지 (<서식 1> 활용)
- 2. 제안서 내용 (A4용지로, "아래한글" 활용요망, 50페이지 이내)
- 3. 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 (<서식 2> 활용, 제안서와 합본가능)
- 4. 용역(연구) 수행실적 (<서식 3> 활용, 제안서와 합본가능)
- 5. 전문가 보유 현황 (<서식 4> 활용, 제안서와 합본가능)
- 6.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이력사항 (<서식 5> 활용, 제안서와 합본가능)
- 7.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서 (<서식 6> 및 <서식 7> 활용)
- 8.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(<서식 8> 활용)
- 9. 첨부자료
  - 각종 증빙자료 (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 자료)
  -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

<서식 1>



# 과 업 제 안 서

용역명 : 용지보상시스템 확대·개편 방안 연구

업체(기관)명: (인)

# <서식 2>

# 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
		2.대표자	
	년	월 일	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
자본금			
매출액			
	자본금	구분 2020년 자본금	년 월 일 구분 2020년 2021년 자본금

# 용역(연구) 수행실적

건명	개요	용역금액 (백만원)	발주처	용역(연구) 기간	비고

- 주) 1.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\*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(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) 유사업무 연구용역 2천만원 실적(단일건 기준)을 일자 순으로 기재
  - \* 공공기관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지정한 공공기관을 말함
  - 2.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
  - 3.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
  - 4.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(최종보고서 표지 및 연구진 구성 관련 면 사본) 등 증빙 자료 첨부

# 전문가 보유 현황

분 야	성명	생년월일	직위	주요경력(관련분야)	학위 또는 자격사항

주)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

#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

분 야	성명	생년월일	직위	주요경력 (관련 분야)	학위 및 자격사항
책 임 연구원					
공 동 연구원					
연 구 보조원					

- 주) 1.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.
  - 2.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. (외부 참여자는 제외)
  - 3.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
  - ※ 필수제출서류 :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,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

# 연구인력 이력사항

성	명		소속		직 책		연 령	세
	력			전공		야 경력	년	월
2,	본용 참여 <sup>9</sup>	·역 임무			학위 자격	또는 사항		
				주 요	. 경 력			
		용역 1	명	참 <sup>¢</sup> (년월	기간 ~ 년월)	담당업무	발주처	비고

- 주) 1. 2013.1.1.이후 부동산 및 토지보상 관련 연구수행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
  - 2. 실적증명서(최종보고서 표지 및 연구진 구성 관련 면 사본 등) 등 증빙자료 첨부

### 보안서약서

#### 1. 서약자

- 회사명 :
- 소재지 :
- · 직책(직위):
- 성명 :

#### 2. 내용

본인(본사)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「용지보상시스템 확대·개편 방안 연구」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- 본 사업에서 습득한 **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**에 대하여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**외부에 누설・공개**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.
-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본사가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
2023년 월 일

위 서약인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: 대표이사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### 청렴계약서

당사는 「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」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,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,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・설계・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, 당사의임・직원과 대리인은,

- 1.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, 결의,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.
  -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  -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  - 이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아래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
    - 1. 입찰자: 입찰금액의 100분의5
    - 2. 계약상대자: 계약금액의 100분의10
- 2. 입찰・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・간접적으로

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
- 이를 위반하여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참가하지 않겠습니다.
- 3.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.
  -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.
- 4. 입찰·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'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'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

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,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,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,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- 5. 회사 임·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.
- 6. 본 건 입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, 서류열람,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- 7.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

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,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,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·형사상 어떠한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. . .

서 약 자 : ○○○회사 대표 ○○○ (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#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

회사명:			
주 소:			

본인은「용지보상시스템 확대·개편 방안 연구」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,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. . .

대표이사 성 명: (인)